

의안번호	제 749 호
의결연월일	2026. 1. 9. (제311회 임시회)

**서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제 출 자	최동묵 의원 외 7명
제출연월일	2025. 12. 23.

서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[최동묵 의원 대표발의]

의안 번호	제 749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12. 23.

제 출 자 : 최동묵, 가선숙, 김맹호,
김용경, 문수기, 이경화,
이정수, 한석화 의원

1. 개정이유

- 수난구호 지원 기준과 절차를 상위법과 현장 여건에 맞게 정비하여, 시민 안전과 구조 활동의 효과를 높이고자 일부 개정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나. 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의2)
- 다.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- 라.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- 마.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: 「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,
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서산시 수난구조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산시 수난구조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“해양재난구조대”란 「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3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설치한 구조대를 말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조난사고의 수난구조 참여자”를 “사람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“조난사고”를 각각 “조난사고 대응에 참여한 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조난사고”를 “조난사고 대응에 참여한 사람(단, 시 관할 해역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한한다.)”으로 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물품의 지원) 시장은 수난구조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 등 수난구조 참여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환수조치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.

1. 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
2. 그 밖에 중복,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

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, 같은 조(중전의 제10조)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,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1조(포상) 시장은 수난구호 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“해양재난구조대”란 「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설치한 구조대를 말한다.</u></p>
<p>제5조(지원대상)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조난사고의 수난구조 참여자</u>로 한다.</p> <p>1. 서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<u>조난사고</u></p> <p>2. 시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시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<u>조난사고</u></p> <p>3.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<u>조난사고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5조(지원대상) ----- ----- ----- <u>사람으</u>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<u>조난사고 대응에 참여한 사람</u></p> <p>2. ----- ----- <u>조난사고 대응에 참여한 사람</u></p> <p>3. ----- <u>조난사고 대응에 참여한 사람(단, 시 관할 해역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한한다.)</u></p> <p><u>제5조의2(물품의 지원) 시장은 수난구조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 등 수난구조</u></p>

제9조(환수조치) 시장은 제7조의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참여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환수조치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.

1. 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
2. 그 밖에 중복,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

제10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1조(포상) 시장은 수난구호 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.

제12조(현행 제10조와 같음)

《 참고사항 》

가. 관련 법령

■ 「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약칭: 해양재난구조대법)

[시행 2025. 1. 3.] [법률 제19911호, 2024. 1. 2., 제정]

제3조(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)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조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는 각 해양경찰서가 위치한 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, 시·읍 또는 면에 둔다.

③ 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제4장 해양재난구조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

제16조(공유재산의 무상대여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재난구조대에 대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구조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■ 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[시행 2025. 1. 3.] [해양수산부령 제713호, 2025. 1. 3., 타법개정]

제12조(수난구조참여자의 처우 등) ① 법 제30조제2항에서 “수난구조참여자가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”란 구조본부의 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수난구조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. 다만, 고의 또는 과실로 조난사고를 야기한 자는 제외한다.

② 구조본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·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된 제1항에 따른 수난구조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출동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④ 제2항에 따른 수당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출동수

당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조 본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유류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: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

2. 선박에 승선하거나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이 있는 경우: 선박의 승선 원 또는 항공기의 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
⑤ 삭제

⑥ 삭제

⑦ 삭제

⑧ 삭제

나. 예산조치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 요인

- 재정수반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재정수반 요인 없어 미첨부 근거 규정에 의거 생략

4. 작성자 : 해양수산과장 윤여신